

보도자료

THAI THEOUT!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4. 7. 24.(수)

저축은행의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건 등 의결 -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 (30건)	29개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지정기간 연장 (8건)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을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네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 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용장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 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중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530)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보균 (02-2100-2841)
				사무관	이석애 (02-2100-2859)
				사무관	김혜수 (02-2100-2872)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2-2100-2994)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금융정책과		서기관	임형준 (02-2100-1690)
			담당자	서기관	나혜영 (02-2100-2591)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02-2100-2654)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2100-2660)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2100-2661)
Ī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7160)
-		디지털혁신국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6770)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오수진 (02-3145-677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서재완 (02-3145-7580)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임잔디 (02-3145-7587)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6700)
		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	팀 장	황준웅 (02-3145-654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오상완 (02-3145-8100)
		기업공시국	담당자	팀 장	김준호 (02-3145-847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김국년 (02-3145-8200)
		금융그룹감독실	담당자	팀 장	장항필 (02-3145-8210)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0건)

11~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 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 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에 따른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24.1월, 금융위)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

[특례내용] ¹⁰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호 ¹⁰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온투업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⁹또한,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 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본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차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금액,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됩니다.(온투업자 및 저축은행)

[향후 일정]

저축은행-온투업자 연계투자 계약 체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24년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③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장기 자금조달수단 으로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이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 ** 「2024년 금융위원회 업무 추진계획」('24.1월)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
- [특례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법상 업무범위와 지급보증 대상은 적용 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금공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여 재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채권유동화계획 등록 등의 절차, 신탁업 인가 및 신탁업자 관련 규제 적용, 수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후 정기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발행기관인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도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주금공의 재유동화 대상은 국내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본드에 한하며, 주금공이 운영하고 있는 적정 지급보증배수('24년 38.6배) 내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계획과 매분기말 재유동화 현황을 금융위에 정례적으로 보고하여야합니다.

[향후 일정]

사업 참여 금융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4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역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8건)

11~8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기존 지정내용]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중권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중권 등의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주식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하여「자본시장법」 및「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사별 연장된 지정 기간

- ▶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 '24.9.26. ~ '26.9.25. (2년)
- ▶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 '24.10.4. ~ '26.10.3. (2년)